

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(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)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(생략)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<u>시정을</u>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 ③(생략)	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(현행과 같음) ② - - - - - - - - - <u>시정(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)을 필요로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, ③(현행과 같음)